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
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푸른미래도시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81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·운영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
- 나. 상설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(안 제5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7조제1항, 제7조제4항, 부칙<제14298호, 2016.12.2.>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도시농업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상설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나. 주요 내용

- 1)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함.
- 2) 상설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(안 제5조제4항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판단됨
- 이와 관련하여, 본 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가 상위법령의 위임 및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설치를 유지하되 소관 사무가 유사한 위원회를 통하여 대행이 가능한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7. 9. 22.] [법률 제14650호, 2017. 3. 21., 일부개정]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

제7조(도시농업협의회)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 2.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
 3.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
 4.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 5.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1.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 2.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농촌진흥청,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
-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 <법률 제14298호, 2016. 12. 2.>

제2조(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